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963호
------	--------

제출년월일: 2006. 03. 20.

제 출 자: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 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개선, 지도 받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
- 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계정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정을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통합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여성·아동복지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개정(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호)
- 나.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하여 세분화·전문화함 (안 제4조)
- 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자활사업, 자활공동체융자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통합(안 제5조제1항)
- 라. 기존 조문을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수정하여 배열함.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71호(2006. 01. 27. ~ 2006. 02. 16.)
  -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의료급여법 제25조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선, 지도(안)

##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5. “여성복지사업”이라 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6.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7.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8. “수급권자”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6. 적립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7.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복지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여성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기초생활보장사업
6. 의료급여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처리한다. 단, 자활사업, 자활공동체육자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및 의료급여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안정적인 기금증식 사업

③기금은 당해년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과 의료급여사업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계정별 담당6급 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제10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제7호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어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2.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4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 제3장 장애인복지사업

**제15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2호의 장애인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사업
3.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사업
5.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장 여성복지사업

**제16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5호 및 제4조제3호의 여성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여성권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6.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7.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장 노인복지사업

**제17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4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2. 고성군 노인회보 발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회 운영지원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6장 기초생활보장사업

### 제1절 기금의 지원 및 용자

**제18조(용자신청)** ①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으로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후견 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한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은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자신청서에는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용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용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용자금 대출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등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용자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용자신청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③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용자는 자활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 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

한 추천서에 의거 자활공동체당 융자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가구당 융자액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21조(중복금의 종류)**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융자금의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단,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으나 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융자액이 자활공동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사업계획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업계획 및 지원받은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매년 12. 31.) 고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절 기금의 반환 및 상환

**제24조(지원금의 회수·반환)**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자금의 사용용도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중단 및 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금의 회수·반환)** ①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그 융자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없이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군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용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없이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받은 자가 군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26조(용자금의 반환통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상환 기일 전에 용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용자금의 회수를 수탁금융기관 및 반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반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용자금의 상환기간)** ①사업자금을 용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잔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가구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한다.

**제2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절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용자

**제29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5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기타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3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4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제32조(융자대상)** ①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4. 고소득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5. 저소득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5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 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용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장 의료급여사업

**제33조(급여비용의 대불)**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다.

**제34조(급여비용의 대불신청)** ①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2종 수급자로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대부신청서를 의료 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계정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납입과목,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 무자에게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8장 보 칙

**제4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41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